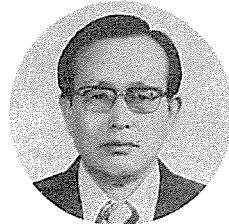


서울 건축사 마을금고 설립을 기대하면서

宋 寬 植



마을금고 란 법령 제2338호로 발효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서 1972년 8월 17일자로 시행공포된 이후 지역별 직장별 단위로 조직되는 직장금고가 있고 지역별 마을금고와 연합회가 있어서 지도육성 하고있는 범 국민 새마을운동의 일환이며 그 사업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자 : 1좌금액 100원 이상
2. 출자한도 : 1회원의 출자액 총출자금의 1/10이내
3. 출자증서 : 출자증권 또는 통장발급
4. 출자금양도 : 회원간에 한하여 가능.
5. 적금및예탁금 : 회원으로부터 수납한다.
6. 대출 : 그용도가 전전한 것에 한하여 대출
7. 대출한도 : 총출자금의 1 / 10 이내.
8. 대부상환 : 20개월 범위로 분할 상환.
9. 보험료수납 : 회원의 보험료 대리수납.
10. 복지사업 : 회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행 할수있다.
11. 보호예수 :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서류 등의 보관.
12. 여유자금의 운용 : 증권 식탁예치 국채 지방채 및 소정의 유가증권 매입.
13. 이익금의처분 : 매년 1회 이익금을 출자금 비례로 회원에 배당한다.
14. 기타 규정 : 생략함.

이상과 같은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일개의 은행 업무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 성격은 완전히 상의한 것이다.

그것은 첫째 시중은행은 주주가 따로 있고 고객이 따로 있어서 주주만이 그 이익의 배당을 받을수 있으나 마을금고에서는 회원이 고객이고 동시에 회원이 주주가 되는 것이다. 회원만이 거래할수 있는 금고로서 회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인 것이다. 그리고 서울 건축사 마을금고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건축사 마을금고에서는 현금출납을 일절 아니할 것이고 통계재료와 사무관리만을 담당하면 된다고 사료되며 다만 통장이 각

개인의 통장이 아니고 마을금고 통장이 되는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을금고 통장을 각회원이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거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주는 마을금고라는 하나의 단체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금고라는 하나의 단체가 받는 세제의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제의혜택”을 설명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이자소득세 면제
- 2) 사업소득세 면제. 3) 단, 방위세만 부과.

위와같이 국가에서 세제상으로 면세혜택을 받게해서 정책적으로 육성코져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보겠다. 다시 설명한다면 개인의 예금이식이나 마을금고의 예금이식은 그이율은 같지만 수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 마을금고가 개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금고가 회원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해도 그소득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고 또는 우리회원이 은행에 거래를 개인 명의로 예치하였다가 필요한 만큼 인출을 하고서 통장에는 잔고를 남겨서 계속 여유자금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마을금고에서는 신탁채권등 유리한 사업에 투자 할수가 있고 또한 그소득에서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개인별 예치제도에서는 볼수없는 막대한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이익은 회원에게 다시 배당되는 것이다.

“융자 혜택”우리 회원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려면 설명할 것도 없이 금융건축정책으로 인하여 구애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기는 자기돈 자기가 쓰는 만큼이나 수월하게 융자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조직으로 구성되는 우리 마을금고는 그 규모로 보와서도 서울의 시중은행의 일개 지점에 비교되는 큰 규모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공신력이 있다”사회에서 인정받고 국가에서 보호 육성하는 마을금고를 설립 하며는 우리 회원들은 안심하고 거

래 할수있으며 수시로 연합회의 지도감독을 받음으로 안정이 보장된다.

“사업상의 이익보장” 시중은행과는 달리 복지사업을 할수있다.

마을금고가 구판사업을 한다면 첫째 생산계열에서 직배를 받을수가 있어서 생산가격으로 구입할수가 있고 판매가격이나 수매하는 고객이 보장되며 자금회전이 빨라서 그 수익성이 보장됨은 물론 그 수익은 소비자인 우리회원에게 되돌아 가는 것이다 우리 건축사 협회는 비영리단체로써 회관을 가지고도 임대사업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다보면 오히려 임대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을금고를 설립하고 마을금고 회관을 전립하고 그 회관을 임대하여도 사업소득세가 면세되는 고로 소득에 보장이 가능한 것이며 마을금고는 회원의 소

년 월	예치금액	인출금액	예치 잔액	비 고
77. 8.			2,641,396,500	
9.	931,003,260	788,803,918	2,783,595,842	
10.	765,223,638	852,892,189	2,695,927,291	
11.	325,267,285	619,699,249	2,341,495,327	
12.	222,678,600	636,259,655	1,927,914,272	
78. 1.	83,758,660	342,662,656	1,669,010,276	
2.	263,292,890	415,648,267	1,516,654,899	
3.	769,259,264	551,161,644	1,734,152,519	
4.	823,361,695	543,233,130	2,014,281,084	
5.	871,580,367	716,465,908	2,169,395,543	
6.	921,073,403	613,811,239	2,476,657,707	
7.	470,141,723	561,190,560	2,365,608,870	
8.	494,812,474	607,477,635	2,252,943,709	

이상 증소득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건축사 마을금고 설립시의 잇점

구 별	현 행	마을금고설립후	결 과
1. 예치금이자(예치금액 69억원 이상)	총이자총액 = 589,950,000원 공제 세액 = 34,659,562원 차인 잔액 = (복지기금) 555,290,478원	이자총액 = 589,950,000원 공제 세액 = 2,949,750원 (방위세) 차인 잔액 = (복지기금) 587,000,250원	마을금고에서 예치업무를 취급하면 방위세만 납부하 므로 587,000,250 - 555,29 0,438 = 31,709,812원이 이익이 됨.
2. 예치금연중 최저잔액이 15억원 17.1% = 256,500,000 잔액이 15억원이상 이됨으로 이것을 정 기 예금하지 않고 개 발신탁수익증권을 매 입하게 되면	공제 세액 = 15,069,375 256,500,000 - 15,069,375 = 241,430,625	15억원 26.04% = 390,000,000 원 방위세 = 1,953,000 390,600,000 - 1,953,000 = 388,647,000	정기 예금보다 증권을 매입 하게 되면 388,647,000 - 241,430,625 = 147,216,375원이 이익이 됨.
3. 년금사업기금 79년증권매입예상액을 6억원으로 보면	2년제(년 23.07%) 이자총액 = 138,420,000 공제 세액 = 8,132,175 차인 잔액(복지기금) = 130,287,825원	마을금고 명의로 증권을 매 입하면 제세금(방위세 제외) 이 면제됨으로 수입이 자는 137,727,900원	세금공제 혜택으로 130,287,825 - 137,727,900 = 7,440,075원이 이익이 됨.
계	927,008,888	1,113,375,150	마을금고를 설립하면 186,366,262원이 이익이 됨

유로 되는 것이며 그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회원들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복지회와의 부수되는 수익”

먼저 복지회의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인물 참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간 거래 금액이 가장 많았던 9억 3천만원인 때가 있었나 하면 가장 적은 8억 3백만원 일때도 있었으나 연간통계 거래액은 연간 6십 9억 4천 2백 11만여 원이나 되는 거대한 금액을 거래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잔액 중 가장 적은것이 15억 1천 6백 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금액은 당시 계속 여유자금으로 예치 되고 있었던것을 알수가 있읍니다.

“여유자금 활용”이와같이 당시 여유자금을 마을금고에서는 유통 과정으로 돌려서 년간 1억 4천 7백여 만원의 가와수익이 될수있다 「예치금이율증가」 각회원별 개인 앞으로 예치 하던것을 마을금고 단일명의로 예치 할경우의 증가되는 소득은 년간 3천 1백 70여 만월이 증수입이 되는것이며 「신탁채권매입에 따른 증소득」 각회원 개개인으로 구성된 복지회 명의로 구입하는 신탁채권 보다 마을금고 명의로 신탁채권 매입을 할시 증소득 금액은 년간 7백 4십여 만원의 증소득이 되는것으로 이것을 대비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증소득 총액은 년간 1억 8천 6백여 만원이 되는 것으로써 사업비로 년간 약 3,000 만원이 소비된다고 해도 이것을 5년간 계속 한다고 믿고 보면 8억 예의 거금이 확보되는 것이고 우리서울 건축사 마을금고회관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큰 마을금 고로 등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서울 건축사 복지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권위있는 보다 좋은 복지사업이 가능할것입니다.

〈유인물 참조〉

“복지화와 마을금고의 연관되는 문제” 여러분 중에는 마을금고가 설립되면 복지회는 어찌되는것인가 하고 염려 하실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예치제도 : 현행제도와 변함없음. 단 통장이 마을금고 통장으로 바뀜.

2. 중도인출 : 중도인출은 자유이나 응자제도에 따라서 중도인출 보다는 응자제도를 환영할 것임.

3. 년금배당 : 현행제도와 변함없음.

4. 증소득금액의 분배 : 복지년금에 충당하고 여유자금은 회원 각자 실적비례로 배당할 것임.

이와같은 복지사업은 서울서만이 아니고 전국 시도지부 별로 설립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이 사업을 계획하기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노고가 있었으며 아직도 더 다듬어야할 운영규정이 완성되는 대로 총회의 결의를 얻어서 시행되는날이 기대되는 바랍니다.

복지회 사업만을 비교해 보아도, 이와같은 증소득이 된다는 것은 보장이 되는것이고 회원 다수가 원하는 기타사업을 안심하고 추진할수 있다는 것임을 알수있읍니다.

참고사항

1. 77. 7. 15. 제7회 운영위원회에서 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연구소위원회를 구성.
2. 77. 8. 12. 제1회 소위원회에서 마을금고 연합회 지도위원을 초빙하여 자문을 받기로함.

3. 77. 8. 19. 제2회 소위원회에서 마을금고 서울지부 지도부장 조형상씨를 초빙하여 설립추진에 따른 문제들을 협의하였음.
4. 77. 10. 6. 제3회 소위원회에서 회원들의 복리증진에 잇점이 있으므로 다음 운영위원회에 상정결의하기로 함.
5. 77. 10. 14. 제9회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회의때까지 연기 되었음.
6. 77. 11. 4. 제10회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지부 임원, 분소장, 각지역 친목회장 본회운영위원 연석간담회 개최키로함.
7. 77. 11. 11. 간담회 개최하고 마을금고 설립을 추진하도록 참석인원 전원 찬성.
8. 78. 3. 21. 제1회 소위원회의 개최. 마을금고 연합회 지도부장 유흥수씨를 초빙 마을금고 설립에 따른 문제를 협의 하였음.
9. 78. 3. 29. 복지회 임시총회에서 다음총회에 시안을 제출키로 결의 하였음.
10. 78. 6. 2. 제6회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마을금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소위원회에 위촉함.
11. 78. 9. 5. 제2회 소위원회에서 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로 결의하였음.
12. 78. 9. 8. 제7회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마을금고 설립에 수반되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시안하여 다음 운영회에 상정키로함.